

의료법			번호: IV - B - 7		
제 목	국문	대학병원 의사들의 직무발명과 지적재산권			
	영문	In-Service Invent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physicians at the University Hospitals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선규 ¹⁾ , 이세진 ²⁾ , 손명세 ³⁾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학과 ¹⁾ , 한얼특허법률사무소 ²⁾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³⁾			
	영문	Seon Kui Lee ¹⁾ , Se Jin Lee ²⁾ , Myong-sei Sohn ³⁾ Department of Medical Law and Ethic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¹⁾ , Patent Lawyer, Hano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²⁾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³⁾			
분 야	보건관리 의료법	발 표 자	이선규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 연
진행상황	연구중				

1. 연구목적
 1990년대 중반부터 선진 각국과 대형 다국적 기업들은 새로운 유전자 정보의 확보가 향후 생명공학산업성 폐의 척도로 보고 유전체의 기능을 파악하는 연구에 엄청난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 연구의 중심에서 한 축을 담당하며 그 역할이 기대되는 연구자들이 바로 종합병원의 의사, 특히 연구기관인 대학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의 교수들일 것이다. 대부분의 생명과학 연구는 거대한 연구비와 고가의 장비 그리고 우수한 연구진이 수반되는 작업으로서 대부분은 국가나 산업체 또는 소속기관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그 연구의 결과물이 가져올 이익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당해 연구에 대한 지원기관이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지원기관의 기여분에 대한 이익분배 요구가 대표적으로 표출되고 적용되는 제도가 바로 직무발명 제도이다. 기존의 직무발명제도가 소속기관과 투자기관이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는 대학병원의사에게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도출해 보고자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의과대학의 연구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현행 국내 특허법상 직무발명제도에 관해 그 개념과 구성요건 및 보상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셋째, 직무발명에 관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태리의 법 제도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넷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대학병원 의사의 소속기관인 의과대학과 병원의 관계, 지원기관과 대학, 병원과의 관계 등을 다면적으로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대학병원의사의 직무발명에 대해 그 법적인 지위와 권리귀속주체 선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안을 제시한다.

3. 연구결과

정부의 생명공학 지원과 학계의 당해 분야 연구발전을 위한 노력은 특히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최근에 와서 활발히 이루어져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이 88년 이후 9년간의 실적보다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의 증대와 발명의 증가는 직무발명과 그 특허권 귀속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직무발명제도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투자를 한 사용자와 연구개발을 한 종업원 사이에 발명에 관한 권리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써 민법상 고용관계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처리될 수 없는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권리귀속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정책 내지는 노동정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각국은 법률의 형태는 다르지만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와 연구에 있어 다양한 관계가 설정되는 대학병원 의사의 직무발명의 경우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고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발명을 창작시 대학교수로서 학교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신고와 권리승계의무를 대학에 지켜야 하고 동시에 같은 의무를 소속 교육병원의 의사로서 병원에 지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특허의 출원단계부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어떤 경우든지 채용시 서약한 소속기관의 근무규정의 준수를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직무발명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는 교수의 발명에 대해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수와 소속기관과의 권리관계를 명백히 명문화하여 이익의 분배가 공정히 이루어질 수 있는 직무발명과 그 보상에 관한 규정을 재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국책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하여 다수의 연구책임자가 공동연구를 할 경우 연구종료후 발생하는 특허의 출원, 등록, 유지 및 실시에 관한 비용의 분담과 이익의 배분에 관한 원칙을 미리 서면계약으로 명시해 둘으로써 연구에 참여하는 당사자인 연구책임자, 연구수행기관, 연구용역 위탁기관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피할 수 있을 것이다.